

총리령 제 호

「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」

일부개정령안

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(백신의 시험만 해당한다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)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시험의 수탁자 가. ~ 아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 략)	제11조(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<u>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(백신의 시험만 해당한다)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